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44

발의연월일: 2025. 5. 19.

발 의 자 : 민형배・이개호・정동영

김동아 • 박지원 • 김용민

양문석 • 이성윤 • 소병훈

김성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 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법률 제 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	제1조(목적)
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	
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지역균형개발 및 국
<u>발전</u> 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다.	